

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. 11. 27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280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3. 박다미의원 대표발의(13명 발의)

나. 상정의결

-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11. 27.)
“수정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대표발의자 : 박다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하고,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여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기부자 명부 관리 등(안 제5조)
- 기부자 예우(안 제6조)
-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등(안 제7조부터 제9조)
-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절차 등(안 제10조부터 제13조)
- 지정기탁서 등 서류 양식(별지 제1호부터 제3호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시행령 등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조례안 예고 : 2023. 11. 06. ~ 11. 10.(5일간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본 조례안은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서울의 경우, 서울시 본청 이외에 강동구, 광진구, 서초구, 송파구 등 13개 자치구가 시행 중에 있음
- 위임 근거 법률인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(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·접수 제한 등)를 보면,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·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·출연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·출연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(제1항)하고 있음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·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·출연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지만, 예외로 규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게 하였음(제2항)
- 또한,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, 대법원,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음(제3항)
-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자·출연기관은 일반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, 접수할 수는 있으나, 접수할 경우에도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으로 기탁된 금품이어야 하고, 이것도 자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사용이 가능한 것임.

- ☞ 이러한 맥락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을 먼저 검토해 보면,
- 조례가 없더라도 법령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지만, 상위법령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,
 - “기부자 예우”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부족하여 이를 서울시나 타자치구 조례와 조화롭게 맞춰 제정할 필요성을 있을 것임.
- 안 제6조(위원회 설치)는 기탁금품 접수여부와 이에 대한 심의 그리고 기부자 예우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고, 안 제7조(위원회 구성)은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위원회로 되어 있고 위원의 수와 임기 등도 정해져 있는데, 이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지방자치단체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)에 근거한 것임.
- 안 제9조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반영하였는데, 현재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가 서면심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, 서면심의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효율적일 경우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투명한 강남구 기부문화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, 조례안 구성은 상위법령 및 선행 조례들을 참고하여 입안하였기에 큰 쟁점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수정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 2.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. 끝.